# 정 관

##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위즈에이아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WizAI"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유・무선 통신기기 및 부대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
2. PC 및 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
3. 인터넷 관련 사업
4. 도매 및 종합소매업
5.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제조, 판매 및 서비스업
6. 전기변환장치 제조 및 판매
7. 기타 전기,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8. 전기공사업
9. 에너지 Saving 관련 제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
1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11.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및 아날로그 처리방식의 영상음향 결상 기기(터치스크린 및 터치스크린 구동회로/액정표시장치를 포함한 평판표시소자 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
12. 검사 및 정밀측정 자동화 시스템 및 장비 제조, 판매업
13. 반도체 제조기기 및 검사기기 제조, 판매업
14. 정보통신 주변기기 및 안테나 제조 및 판매업
15. 무선충전 응용제품 제조 및 판매업
16. 전자집적회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 및 판매
17.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 및 판매
18.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19. 전기, 전자, 통신기계기구 및 부품 제조판매업
20. 지능형, 산업용 로봇과 동 부품 및 시스템의 제조, 판매업
21. 신기술 관련 개발, 투자, 관리 운영사업
22.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3. 기업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획, 개발, 제작, 라이선스 공급업
24. 글로벌 플랫폼 운영 및 해외 현지화 서비스업
25.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및 퍼블리싱업
26. 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
27. 캐릭터 디자인, 라이선싱 및 머천다이징 사업

28.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용 로봇의 연구 및 개발업
29.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용 로봇 제조 및 위탁제조업
30. 인공지능(AI) 기반 교육용 로봇 유통, 판매, 임대 및 유지보수업
31.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제작 및 공급업
32. 전자, 정보통신 장비의 연구 및 개발업
33. 전자, 정보통신 장비의 제조 및 위탁제조업
34. 전자, 정보통신 장비 유통, 판매, 임대 및 유지보수업
35.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36.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37. 온,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업
38. 비디오, 서적, 오디오 등 제조, 판매, 대여업
39.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40. 브랜드 마케팅 및 프로모션 기획업
41.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유통 및 중개업
42.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43.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제조 및 위탁제조업
44. 위 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 및 무역중개업
45.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및 해외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①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izai.kr)에 게재한다.

②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머니투데이에 게재한다.

③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는 경우 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며,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2장 주식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천만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이백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제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의 7종으로 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의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5.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모집 또는 유상증자를 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6.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며,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한 주식의 수는 제1항의 한도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이를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한다. 다만,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으로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두지 않는다.

② 필요할 경우 명의개서 대리인의 지정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경우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의1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대표이사 또는 제11조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경우 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2조의2 (전자주주명부)**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사채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삭제

## 제4장 총회

**제17조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의1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서면결의)**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주주총회일의 2주 전(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4조의1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1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5장 이사·이사회

**제29조 (이사의 수,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총 1명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감사 1명을 둔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법 제409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감사의 선임)**

감사는 제27조의1의 규정에 의한 결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2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3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의1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의2 (감사의 직무)**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의3 (집행임원)**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집행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③ 집행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의4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36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7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9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9조의2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의 특례)**

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지 아니하며, 이 정관 중 이사회의 소집·결의방법·의사록 및 이사회에 대한 보고 등 이사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이사(이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상법 제38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자기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제1항 단서)
2. 전환에 관한 통지(상법 제346조제3항)
3.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상법 제362조)
4. 주주제안의 처리(상법 제363조의2제3항)
5.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 수령(상법 제366조제1항)
6. 전자투표의 결정(상법 제368조의4제1항)
7.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업무집행의 결정(상법 제393조제1항)
8. 감사의 임시총회 소집청구 수령(상법 제412조의3제1항)

③ 제1항의 경우 상법 제38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이 정관 중 "이사회"는 "주주총회"로 본다.

1. 주식양도의 승인 및 관련 절차(상법 제335조, 제335조의2, 제335조의3, 제335조의7)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상법 제340조의3제1항제5호)
3. 이사의 경업 승인, 회사기회 이용 승인, 자기거래 승인(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4.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본문)
5.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상법 제451조제2항)
6.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상법 제461조제1항 본문·제3항)
7.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제1항)
8. 배당금 지급시기(상법 제464조의2제1항)
9.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상법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제516조의2제2항 본문)

④ 제1항의 경우 상법 제383조제5항에서 정한 규정과 이에 대응하는 이 정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이사가 2명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이사가 3명 이상이 된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장 회계

**제40조 (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비치·승인·공고)**

①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회사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사는 이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업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5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1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2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보유·처분 및 소각)**

① 회사는 상법 제341조에 따라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법 제34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4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그 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상법 제341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상법 제383조제6항에 따라 대표이사의 결정)로 소각할 수 있다.

⑥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상대방 및 처분방법은 이사회(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제43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④ 이익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정)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중간배당)**

①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부칙

**제45조 (발기인)**

발기인의 성명, 주소와 그가 설립 시에 인수한 주식 수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제46조 (시행일)**

이 정관은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위즈에이아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서기 2026년 11월 11일

주식회사 "위즈에이아이"

본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9길 6, JS타워 3층 브이1482

| 구분 | 성명 | 인수 주식 수 | 납입금액 | 지분율 |
|---|---|---|---|---|
| 정관작성자 및 발기인 | 이양현 (인) | 기명식 보통주식 200주 | 1,000,000원 (1주 5,000원) | 100% |

발기인 주민등록번호 : _____

발기인 주소 : _____